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2.12.11>

어선등록자료 통보서

※ [ ] 는 해당란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통보 사항	[ ] 신 규 등 록 [ ] 변 경 등 록 [ ] 말 소	
어선의 소유자	성 명 (대표자명)	전화번호
	주 소	
어 선 정 보	어선번호	선 박 명
	총 톤수	진수 연월일
	업 종	선 적 항
어선등록 사유 (신규등록인 경우에만 기재)	[ ] 건조 [ ] 수입 [ ] 기타 ( )	
변경 사항 (변경등록인 경우에만 기재)	변경등록 사유:	
	당 초:	변 경:
말소등록 사유 (말소인 경우에만 기재)		

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어선원부 2.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	수수료 없 음

※ 해당 어선의 선적항 관할 수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